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신설〉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57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사항	5

I .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8. 13.

(3) 회 부 일 : 2026. 8.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II.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③ (생략)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u>
<u>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는 시스템-----</u> ----- ----- ----- -----.
<u>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u>	<u>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u> ----- -----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2. 검토사항

- ‘검역(檢疫)’이란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 등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격리, 방역 등 일련의 감염병 예방 활동¹⁾을 말함.
- 현행법 제29조의2는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검역법」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2.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4.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③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 검역업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입국정보,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

1) 「검역업무지침(질병관리청 지침)」

(개념)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 등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격리, 방역 등 일련의 감염병 예방 활동

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시스템’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²⁾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질병관리청은 2008년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년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의 분절적 운영과 정보 연계의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 신종감염병 및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방역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감염병 치료내용,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6. 「결핵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③ 법 제40조의5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검역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부터 두 시스템을 통합한 ‘방역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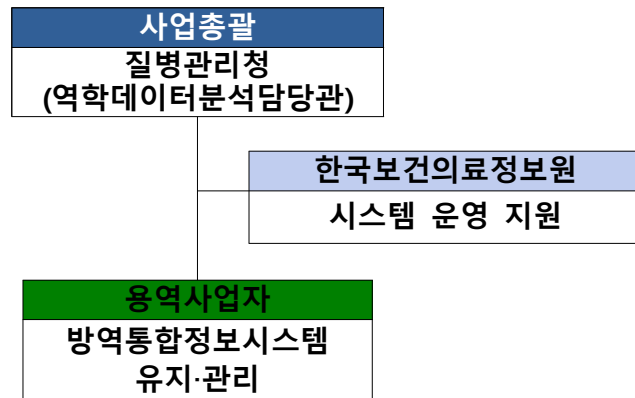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법정감염병(제1급부터 제4급까지) 및 검역조사 업무에 대한 통합감시, 병원체 진단, 역학조사, 환자·접촉자 관리, 통계분석 등 감염병 방역업무 전반에 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 질병관리청이 시스템 관련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민원 대응, 사용자 교육 및 개인정보 관리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용역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근거: 감염병예방법 40조의5)	검역정보시스템 (근거: 검역법 제29조의2)
(유관기관) 행안부·법무부, 건강보험공단 등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요 >

- **(개요)** 「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5 및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라 법정감염병(제1~4급) 및 검역조사업무에 대한 통합감시, 병원체 진단, 역학조사, 환자·접촉자관리, 통계분석 등의 방역업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 **(사업수행체계)** 질병관리청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등을 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민원대응·사용자교육·개인정보관리 등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며, 용역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수행 체계 >



○ 주요기능

- **(정보통합)** 검역-신고-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 대응과정의 시스템을 통합(감염병, 검역, 코로나19)하여 업무 효율성 및 신종감염병 대응 적시성 확보
- **(편의개선)** 감염병 신고·보고, 역학조사 등 입력 시, 관계기관 공적정보 연계를 통해 입력 편의성 제고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 **(빅데이터)** 수집정보 기반으로 연구분석이 가능한 감염병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정책연구분석 활성화 및 외부개방을 통한 민간 역량 제고
- **(대민누리집)** Q-CODE, 감염병누리집 등 감염병 관련 정보나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유행감염병 발생 시 불안 해소 및 신뢰 형성

자료: 질병관리청

□ 한편, 질병관리청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최초로 추진한 2022년도 1월 당시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연구비(260-01목)에서 민간경상보조비(320-01목)로 전용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동 사업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경상보조비(320-01목)보다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의 비목 변경 필요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6132-510)	제도개선
	지적사항	○ 질병관리청은 동 내역사업의 예산('23년 384억 7,8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비(320-01목)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국가의 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이므로 민간 위탁사업비(320-02목)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정 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의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집행하는 등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특성 및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p/1336)

-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인 반면, 민간위탁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 비교 >

구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
적용범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u>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u>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u>국가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 위탁하는 경우</u> 제반 비용

구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각 소관 부처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단체 등에 업무위탁 가능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집행 상황 점검 등	-
정산	보조사업 완료, 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위탁사업 종료 및 폐지 시 이자 포함 잔액은 국고로 환수

자료: 예산정책처 보고서(2024년도 예산안 분석)를 바탕으로 제작성

-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6년도 예산부터 동 사업의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비(320-01목)에서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변경³⁾하는 한편,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 시스템 중 하나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위임 및 위탁)에 근거하여 동 법 시행령 개정(25.9.16.)을 통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3)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예산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
○ 민간경상보조(320-01): 725백만원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민간경상보조(12개월분)	○ 민간위탁사업비(320-02): 725백만원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민간위탁사업비(12개월분)

자료: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④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9. 16.>

4. 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관리·보유·처리 및 자료의 입력·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3제2항에서 같다)

□ 따라서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국회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예산 편성·집행 방식과 법률상 위탁 근거를 일치시키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 「정부조직법」 제6조4)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5)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를 필요로 하고 있음.

□ 한편, 개정안 제29조의2제5항은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검역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주체를 현행 ‘질병관리청장’

4)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에서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로 변경하고 있음.

-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는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을 의미하는바, 개정안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해당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면, 그 적용 대상에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주차장법」 등이 있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에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한 만큼,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96